

「한국개혁신학」 제35호 (2012): 8-46.

개혁 교회법이 한국교회에 가지는 의의:

엠던총회(1571)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까지, 지역교회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김 재운

(국제신학대학원대학, 조직신학)

〈한글초록〉

칼빈은 교리와 권징을 하나로 보았고 그 연속선상에서 교회법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요리문답서를 통해 교리의 일치, 교회법을 통해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이 교회적인 삶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추구하였다. 복음 설교와 교회법의 통일성을 강조한 칼빈과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개혁교회들은 신앙고백서와 함께 교회법을 작성하였다.

네덜란드 지역에서 진전된 개혁교회의 교회법은 초기에 제네바 교회법(1541)과 프랑스 파리 총회에서 채택된 교회규칙서(1559)를 모태로 삼는다. 가장 기초적인 네덜란드 개혁교회법은 베이질 회합(1568)의 문서에서 발견된다. 십자가 아래 있는(onder de kruis) 네덜란드 지역의 교회들 뿐 아니라 각국에 있던 피난민들의 교회들이 처음으로 모인 이 회합에서는 프랑스 교회 규칙서 제1항에서 천명되었던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위에 독재권, 지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정신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심화시켰다. 노회와 총회등의 회의는 그 회의 자체의 목적보다 한 지역교회나 말씀의 직분자들이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는 정신을 세부적인 항목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교회들 사이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직분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정신이 강조되었는데 예를 들어 목사의 죄를 다루는 항목에서 교회와 동료 직분자들에 대한 독재권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혹은 은밀한 추구에 대한 시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첫 총회로 모인 엠던 총회(1571)에서는 베이절 회합의 항목들이 가지는 반 위계질서적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장로와 집사의 봉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만큼 직분자들의 독단과 지배에 대한 경계하고 있다. 각각의 지역교회들을 중심에 두고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서 지역교회들의 회합을 명명할 때 단수로 하지 않고 항상 '교회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였다.

베이절 회합과 엠던 총회의 교회법과 그 정신은 도르트 교회법(1619)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도르트 교회법은 이후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어두워졌을 때 교회를 갱신하는 원천이 되었다. 이는 19세기에 이루어진 두 번의 교회개혁의 흐름이었던 '분리'와 '애통'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질서에 대한 생각은 베이절 회합이후에 이어져 온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가진 교회법의 절정이 이루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철저하게 지역교회의 보편성과 독립성을 옹호한다. 모든 각각의 지역교회들은 그 자체로 교회전체이며 그 자체로 완전한 교회이다. 각각의 교회들만이 지상에서 교회이며 모든 권세와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 각각의 지역교회들이 연결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그것은 철저히 지역교회들의 자유로운 연합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카이퍼는 회중교회 입장과는 달리 노회와 총회의 필수성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광의의 회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도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 1) 지역교회들의 독립성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교회연합은 지역교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3) 교회연합의 조

건과 보증은 동등함이다. 종교개혁이후 오랜 기간을 통해서 형성된 이런 개혁교회법과 그 정신은 한편으로는 교권주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각 지역교회들과 말씀의 봉사자들의 독립성과 보편성,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다. 노회나 총회가 광의의 회의로서 지역교회를 세우고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하겠다. 반면에 교권주의의 결과로 개교회주의의 위협 또한 심각한데 교회의 지역교회들의 연합적인 하나됨을 최소화하지 않고 최대화하는 개혁교회법은 교회법과 규례, 광의의 회의를 통한 연합적 결속을 무시하면서 한 직분자의 지배와 더 큰 무질서 속에 빠져 들어가는 위험에 대해서도 도움이 줄 수 있다고 본다.

* 주제어: 교회법, 개혁교회, 아브라함 카이퍼, 엠던 총회, 도르트 총회, 헤르만 바빙크

I. 서론

17세기 개혁신학자인 후치우스 (Gisbertus Voetius)는 교회법을 ‘가시적 교회의 다스림에 대한 거룩한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카이퍼 (Abraham Kuyper)는 교회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교회적 제도의 건축학: 교회적 기관의 구조’, 둘째는 ‘이 교회적 제도에 의해서 인정된 법적인 관계들: 교회 자체에 의해서 진척된 규칙들’로 나누어서 정의한다.¹ 칼빈과 그 이후의 개혁교회들은 믿는 바를 따라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그것과 함

¹ W. Bakker, “Wat is kerkrecht?” in *Inleiding tot de studie van het Kerkrecht*, edited by W. van't Spijker (Kampen: Kok, 1990), 15.

게 교회법을 정하고 채택하였다. 1559년 프랑스 교회의 파리 총회와 1571년의 엠던 총회, 1618-19년의 도르트레흐트 총회 그리고 1652년에 마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에 해당한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돌아오자마자 1541년에 교회법규(*Ecclesiastical Ordinances*)를 작성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분자들에게 대한 것이다. 이유는 교회의 중심적인 부분이 설교와 권징의 봉사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교리(*doctrina*)와 권징(*disciplina*)를 하나로 보고 그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칼빈에게는 교회의 치리, 목회적 직분, 다른 질서들, 성례의 시행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인 교회의 몸을 이룬다. 교회법과 규례들의 목표는 복음 설교를 진전시키고 강화하고 보호, 보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설교는 교회법과 규례들이 생생하게 실현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도구가 된다.² 이런 점에서 칼빈은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요리문답서를 통해 교리의 일치, 교회법을 통해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이 교회적인 삶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추구하였다. 복음 설교와 교회법의 이런 통일성을 강조한 칼빈과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개혁교회들이 신앙고백서와 함께 교회법을 작성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³

개혁교회들이 가졌던 이런 교회법에 대한 관심은 한국교회에서는 본격화되지 않았다. ‘교회법’이라는 말이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법’이라는

² W. van 't Spijker, "De opvattingen van de Reformatoren," in *Inleiding tot de studie van het Kerkrecht*, 101.

³ 교회법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성경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법의 권위는 성경에 기초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교회법은 변화가능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법이 신앙고백서와 함께 작성되고 채택되었다는 말이 신앙고백서와 교회법이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다른 교회법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앙고백과 교회법을 분리하고자 하는 재세례파의 경향도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반영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법을 구체화시켰다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성경과 신앙고백, 그리고 교회법의 차별성을 인식하면서도 교회법이 성경과 신앙고백서와 가지는 연관성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회법은 교회가 신앙고백에 일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용어의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교회안에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안착되었다. 더구나 교회법이 교권정치적 상황속에서 성도와 직분자들 사이에서 혹은 직분자들 상호간 나아가 교회들간에 상대방을 억압하는 도구 정도로 오용되면서 본래적 의미나 내용, 원리로 접근되기 보다는 교권정치의 도구로 비취지는 경향이 있다. 비인격적인 형식주의, 정신보다는 조항자체에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교회법은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에서는 신앙고백의 중요성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법에 대한 관심 또한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실질적으로는 대형교회가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는 일종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정치가 좌우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반면에 교권정치에 대한 강한 반발로 개교회주의가 강화되는 현상도 공존한다. 각 교회별로 정관 갖기 운동들이 펼쳐지면서 신앙고백에 천착하지 않는 개별교회의 정관이 오히려 무질서를 만들어 내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개혁자들과 개혁주의 교회들이 교회법을 작성하고 채택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무관심과 부정적인 반응 속에서 무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네덜란드 개혁교회법을 다룬다. 초기의 베이질 회합(1568)에서부터 아브라함 카이퍼까지 치리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살핀다. 장로교가 다수를 점하는 한국교회 특성상 스코틀랜드와 신대륙에서 꽃핀 장로교 교회법과 치리회의 관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같은 프랑스 개혁교회 모델을 따르지만 조금은 특수한 상황과 모습으로 발전해간 네덜란드 개혁교회법은 비교적 적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이 부분은 네덜란드에서 수학하고 호주개혁교회에서 10여년간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교회를 섬겼던 허순길박사의 저작들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거기에서는 간략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장로교 교회법과 개혁교회법이 치리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정도가 소개되어 있다.⁴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법의 뿌리와 형성, 발전과 정착과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제시하고자 한다. 각 시대의 교회법이 조금씩 특수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제시하겠지만 주로 직분과 치리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⁵

II. 제네바 교회법에서 엠던⁶ 총회(1571년)까지

1571년 열린 엠던 총회는 네덜란드 지역 개혁교회들의 최초의 총회이다. 여기서 채택된 교회법은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Geneefse kerkorde,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년, 이하 제네바 교회법)과 프랑스 개혁교회의 파리 총회의 교회 규칙서(*Discipline ecclesiastique*, 1559년) 그리고 네덜란드 지역교회들의 최초의 회집이자 엠던 총회의 모태가 되었던 베이절 회의 합의 항목들(*De Wezelsche Artikelen*, 1568년, 이하 베이절 항목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네덜란드에 미친 칼빈의 영향력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불어를 사용하는 네덜란드 남부의 교회들이다. 1540년대에 이미 도르닉(Doornik), 레이셀(Rijsel, Lille) 같은 도시들에서 개혁주의의 중심지들이 생겨났다. 1559년부터 귀도 더 브레가 위의 두 도시의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지도하였다. 이어서 네덜란드를 주로 사용했던 폴란드스

⁴ 참고. 허순길, 『개혁교회 목회와 생활』 (서울: 고신총회출판국, 1994), 121-24.

⁵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개혁교회법에, 그 중에서도 개혁교회 치리원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의의를 살피는데 있다. 개혁교회 치리질서는 한국교회의 주류인 장로교회 정치체제와는 교회의 권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구별된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갱신에 주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장로교회 정치체제와 개혁교회 치리질서를 비교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만 이 논문의 주된 목적에서 벗어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개혁교회 치리질서의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핵심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⁶ 엠던은 독일북부에 있는 도시로서 현재 네덜란드와 접경지에 위치해있다. 폴란드 출신인 요하네스 알 라스코(Johannes a Lasco)는 바젤에서 공부하면서 츠빙글리와 교제했고 개신교 목사가 되었다. 1541년 경에 엠던에서 잠시 목회하고 런던으로 건너갔다. 이로 인해서 엠던은 런던에 있는 개혁파 피난민으로 구성된 교회와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

지방의 중요한 도시, 헨트(Gent), 브루게(Brugge), 안트베르펜(Antwerpen)에 사는 소수였던 불어 사용 교회들이 칼빈주의를 확산했다. 이 지역의 네덜란드어 사용교회들이 칼빈과 직접 교류가 없었음에도 칼빈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섰다.⁷ 다른 경로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한 개인적 접촉이다. 1559년부터 1564년까지 열 세명의 네덜란드 출신 학생이 공부했는데 네덜란드어권의 학생은 1566년에 처음으로 등록되었다. 주목할만한 인물은 필립스 마르닉스(Pilips Marnix van Sint Aldegonde)인데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과 베자에게서 수학했다. 이후에 그는 네덜란드 초대 국왕이 된 빌럼 판 오란제(Willem van Oranje)의 자문자로서, 엠던 총회를 개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경로가 런던, 엠던, 프랑크푸르트와 하이델베르크의 네덜란드 피난민교회들이다. 런던의 피난민교회의 세 기둥중 두 중심인물 들인 헨트출신 얀 우텐호프(Jan Utenhove)와 더 클레이너(de Cleyne)는 칼빈과 교류하면서 엠던에서부터 런던에 있는 교회에 합류한 알 라스코와 함께 런던과 엠던에서의 개혁교회를 이끌었다. 메츠(Metz)와 하이델베르크에서 목사로 시무한 판 쾰른(van Keulen)과 메츠, 프랑크푸르트, 엠던의 목사였던 얀 판 케르크호퍼(Jan van Kerckhove)도 칼빈의 지속적 영향력속에 있었다.⁸ 이처럼 네덜란드 지역에 칼빈의 영향력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초기에는 루터와 쾰빙글리등 다양한 개혁주의자들과의 접촉과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영향력이래로 신속하게 흡수되었다. 또한 칼빈의 영향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지역의 교회들은 1560년대부터 하나의 신앙고백적 토대위에서 서로

⁷ Frank van der Pol, "Calvin and the Netherlands," in *Calvin Handbook* edited, by Herman Selderhuis (Grand Rapids: Eerdmans, 2009), 93

⁸ Frank van der Pol, "Calvin and the Netherlands," 89-90.

서로를 위한 연합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엠던 총회의 교회법과 또 그 모태가 되었던 베이질 항목들에서 우리는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이 기초가 되었던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동시에 엠던 총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던 필립스 마르티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엠던 총회의 교회법은 프랑스 모델, 특히 1559년 파리 총회 이후 프랑스 개혁교회들이 형성해갔던 교회 규칙서에 많이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엠던 총회의 교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나마 프랑스 개혁교회 규칙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파리총회와 교회 규칙서(1559)

파리 총회의 교회 규칙서는 분명 제네바와의 연관성속에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 규칙서는 제네바에서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되거나 혹은 달라진 점을 보여주고 있다. 레이몬드 멘츨(Raymond A. Mentzer)은 칼빈이 지역교회들을 위한 합의를 넘어서는 어떤 보다 발전된 교회적인 치리회를 구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당히 놀랍다고 언급한다. 그는 칼빈이 어떤 총회적인(교회적) 정치 조직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지 않았다고 본다. 증거로 기독교 강요 최종판 어디에서도 칼빈은 총회들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고 있으며 프랑스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서 제한되게 그리고 간헐적으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총회적인 조직체를 열심히 추진하지 않았다고 본다.⁹ 사실 칼빈은 1559년 파리 총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 왕의 진영을 자극할

⁹ Raymond A. Mentzer, "Calvin and France," in *Calvin Handbook*, 85. 그러나 멘츨은 이를 제네바의 특수한 상황 곧, 도시 국가인 제네바는 프랑스 교회들이 경험했던 전국적인 교회 조직을 구성해야 하

수 있다는 것이었다.¹⁰ 동시에 그는 서둘러 신앙고백서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집 센 열정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이런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파리 총회는 칼빈의 신학적 지도아래 놓여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¹¹

교회 규칙서는 믿음과 교회적 연합의 규칙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권위아래 놓여야 함을 먼저 제시한다. 25조에서는 강한 표현을 써서 이 규칙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예수의 권위아래 있는 교회가 가진 법은 기록하고 위반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올바른 교회법은 비록 세상 통치자들과 그들의 질서에 반대될 수 있을지라도 모든 교회에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밝힌다.¹² 이어서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무들을 나열한다.¹³ 하지만 좀 더 길고 자세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제네바 교회법에서는 없었던) 교회조직들을 말하는데 지역의 교회들(parochies) 그리고 지역 교회들의 모임인 콜로키(Colloquy, 시찰이라고 봐야), 지역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총회(synods both provincial and national)를 제시한다.¹⁴ 그러나 주목할만한 부분은 다음 언급들이다. 당회만이 항구적인 조직체이고 노회는 ‘임시적’ 기능을 갖는다. 교회 규칙서에는 노회 의장이 모임이 끝남과 더불어 자신의 임무가 끝난다는 규정을 통해서 감독제 경

는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상대화하고 있다. Willem van 't Spijker, *Johannes Calvijn zijn Leven en zijn werk*, 『칼빈의 생애와 신학』, 박태현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262-63. Mentzer, “Calvin and France,” 85. 한편으로 스위스의 각 도시들은 매우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적 처리회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¹⁰ 스페이커, 『칼빈의 생애와 신학』 262-63.

¹¹ Mentzer, “Calvin and France,” 85.

¹² J. Chambon, *Geschiedenis ener Martelaarskerk: Het protestantisme in Frankrijk*, translated by P. v. d. Kraan (Goes: Oosterbaan, 1951), 50-51.

¹³ 제네바 교회법과는 달리 ‘교사’는 다루지 않고 있다. 참고) 최윤배, “프랑스 개혁교회의 예배와 직제에 관한 연구,” 『조직신학연구』 제14호(2011 봄 · 여름호): 158.

¹⁴ Mentzer, “Calvin and France,” 84. 1623년부터는 국왕이 보낸 특사가 모든 시찰회와 총회에 배석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가적 총회의 결정은 세속정치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따라야 했다. Chambon, *Geschiedenis ener Martelaarskerk*, 51.

향을 분명히 피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교회법의 첫 번째 조항은 지역교회의 자유를 대변하는데, “그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를 다스릴 수 없고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이런 지역교회의 자유에 대한 규정은 교회법이 결코 불변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며 만일 지역교회의 유익이 요구한다면 조항들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만 지역교회들 상호간의 결속은 중요한데 개별 지역교회가 그 지방 노회의 조언 없이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어떤 것을 시행해서 안 된다는 규정을 통해서 나타난다.¹⁵ 시찰이나 지역차원에서의 총회는 지역교회들 내부나 상호간 불일치에 대한 해결책에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국가적 자원의 총회에서는 교리에 대한 합의나 통일된 교회구조와 질서에 대한 성문화를 감당하게 되었다.

프랑스 개혁교회의 파리 총회 교회 규칙서는 칼빈이 적극적으로 구상하지 못했던 지역교회들을 넘어서는 교회조직들을 제시했다는 점, 곧 ‘프랑스 개혁교회’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회 곧, 지역교회들의 독립성과 자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다.

2. 베이절 회의(1568)

베이절 회의는 네덜란드 지역과 국제적인 피난민 개혁교회들의 최초의 전체적인 모임이지만 ‘총회’라고 불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네덜란드 성도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onder het kruis)’ 앉아있던 흩어진 교회들, 곧 피난상태에 있었다. 중요한 네덜란드의 지역이 로마교인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고 80년 전쟁중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흩어진 교회들은 공

¹⁵ 스페이커, 『칼빈의 생애와 신학』, 264-65.

식적으로 각 지역교회들의 대표를 파송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총회가 아니라 일종의 회합(convention)이라고 불려진다. 상황적 어려움으로 국경밖의 도시인 베이절에서 모일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도 네덜란드 지역의 개혁교회들은 (볼어권과 네덜란드어권 포괄적으로) 물론 외국에 있는 개혁교회들이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베이절 회의 항목들에서 우리는 두 번씩이나 “주님께서 네덜란드 땅에 복음 설교의 문을 여실 때..(중략)가급적이면 빨리 모든 교회들과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전체 네덜란드를 아우르는 합법적인 총회를 개최할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기의 네덜란드 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볼 수 있다.¹⁶ 베이절 회합은 네덜란드 지역에 있는 그리고 피난민들의 국제적인 개혁교회들이 연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엠던총회로 가는 임시적인 과도기적인 모임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베이절 항목들은 칼빈의 제네바 교회규칙과 그 구성에서 거의 유사하게 보인다. 제네바 교회규칙은 5장으로 구성되고 1-4장에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직분들을 다룬 후 마지막 다섯째 장에서 성례를 다루면서 세례, 성찬, 결혼, 장례, 환자와 죄수의 심방, 어린이아이들의 신앙교육, 위정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다루고 있다.¹⁷ 베이절 항목들은 크게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있다. 2장: 말씀의 봉사자와 교사, 3장 교리문답교육(van den Catechismus), 4장: 장로, 5장: 집사, 6장: 성례, 7장: 결혼, 8장: 권징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약간의 구성상의 변화가 있지만 제네바 교회법과 일치되는 구성을 보여준다. 다만 1장에 ‘지역들의 시찰회에 대하여

¹⁶ De Wezelsche Artikelen van 1568 I, 3, I, 8, in *Kerkelijk Handbockje bevattende de Bepalingen der Nederlansche Synoden en andere sukken van beteekenis voor de regeering der kerken*. Edited by H. H. Kuyper (Kampen: Bos, 1905), 2-3

¹⁷ 『제네바 교회 법규』, 『칼뱅 작품선집 III』, 박건택 편역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129ff.

는’ 제네바 교회법에 없던 항목이다. 여기에는 파리 총회의 규칙서처럼 규정적이지는 않지만 시찰회와(앞으로 모이게 될) 총회의 관계와 구체적인 시행의 내용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베이절 항목들에서는 제네바 교회법과 파리의 교회 규칙서와의 연속성이 확연하게 발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절만의 독특성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베이절 항목들에서 제네바와 파리의 교회 규칙들에 비교해서 좀 더 확연하게 강조된 것은 모든 종류의 위계질서 (hierarchy)에 대한 일관된 반대이다.

첫째, 베이절은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권위, 자유과 보편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8장 20항에서는 지역교회들의 시찰회가 모일 때 행해지는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여기서 시찰회 모임을 한 장소에서 모이지 말 것을,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가급적 다른 다양한 장소에서 모이도록 규정한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시찰이 모인 목적을 엄밀하게 한 조항 한 조항을 따라서 잘 실현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언급하는 항목이 등장한다. 지역교회들의 시찰회 장소에 대한 작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찍이 파리 총회 교회 규칙서의 제1항에서 천명되었던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위에 독재권, 지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정신을 베이절 회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가를 보여준다. 또 다른 예는 5장 18항과 19항인데 18항에서는 먼저 지역교회와 공적으로 임직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공적인 직분자는 전체 시찰회가 교회법적인 검토와 거기에 따른 결정을 얻지 않고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금지함과 반대로 교회들은 위에 언급된 직분자들을 지역 시찰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탈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9항에서는 이런 18항의 궁극적인 정신을 말하는데 18항의

의미가 한 지역교회가 이런 경우들에서 전혀 어떤 스스로의 일들을 허용받지 못하고 한 교회와 그 교회의 공적 직분자들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오직 시찰회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드러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지역교회가 그 교회가 가진 어떤 뜻에 반해서 권리와 권위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한다.

이런 점에서 베이절은 광의의 회의인 시찰회와 총회와의 관계에서 지역교회들이 가지는 완전한 독립성과 권위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잘 보여주면서 시찰회와 총회의 지배권이 지역교회들의 자유와 권위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반-총회주의 입장의 단초들을 볼 수 있다.¹⁸ 추가적으로 베이절에서 이런 지역교회들의 독립성과 자유, 권위에 대한 존중을 엿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8장 7항에서는 목사가 지역교회에서 목사로 임직할 때 하게 되는 서약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목사들은 서약해야 한다) 다른 말씀의 봉사자들이나 또 교회에 대해서 그들을 지배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어떤 작은 권위나 자유도 행사해서는 안된다. 이런 목적으로 자신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의지를 따라서 (교회에) 새로운 규칙들을 도입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교회들 사이에 약속된 규칙들과 총회를 따라야 한다. 혹여 새로운 규칙들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시찰이나 지역교구(provincial parish, 지금의 노회 개념) 회의에서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하고 모든 교회들의 관심아래 합의로서 이루어져야 한다.¹⁹

눈여겨 볼 것은 광의의 회의 곧, 노회와 총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다. 한 목사의 다른 말씀의 봉사자들에 대한 지배와 독재를 막기 위해

¹⁸ Jacob Kamphuis, *Zo vonden wij elkaar: Het begin van het Nederlandse gereformeerde kerkverband, de synode van Emden 1571* (Groningen: uitgeverij de Vuurbaak, 1971), 31.

¹⁹ De Wezelsch Artikelen van 1568, VI, 7.

서, 한 목사가 자의적으로 새로운 교회법과 규칙들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광의의 회의가 고안되고 생각되어졌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광의의 회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광의의 회의 자체의 목적보다 한 지역교회나 말씀의 봉사자들의 자유와 권리가 다른 교회나 목사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베이절 회의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회라는 광의의 회의의 목적이 철저히 목사나 지도자들의 독재적 행태에 대한 위계질서 (hierarchy)적 성격을 막기위한 것이라는 점은 다음 같은 구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총회는 그 결정에 있어서 교리와 신앙고백, 사도들의 규례와 순전한 초대 교회의 모범에 최대한 일치해야 한다. 성경이나 신앙고백 혹은 사도들의 모범에서도 확정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또는 피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진 경우가 아닌 본성상 중립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규정된 어떤 공식적 서식에 의해서도 교회들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폭력을 피하고 분쟁의 불씨를 잘라내는데 있다. (중략) 지역적인 총회²⁰가 이런 일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무엇이 최상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 (1장. 9항)

위의 항목을 통해서 우리는 베이절 회합이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역교회들 사이의 일치와 연합은 반드시 교리와 신앙고백, 사도들의 규례와의 일치에 있다는 점이다. '진리인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교리'안에서의 하나됨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2) 광의의 회의가 공정한 의무적인 결정사항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점이다. 이 점에서 개혁교회법은 분명히 회중교회와 구별된다. 감빠이스는 이런 점에서 개혁교

²⁰ 여기서 provincial synod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시 베이절에 모인 지도자들 사이에서 네덜란드 전체를 세계교회속에서 한 province라고 보고 있다는 관점에 반영되어 있다.

회의 교회법은 지역교회들의 교회연합적인 회합과 그 실행을 최소한 것이 아니라 최대화하는 것이었다고 증거한다. 3) 그러나 동시에 광의의 회의가 가지는 목적이 광의의 회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의 자유와 지역교회들 혹은 지역교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개인이나 한 당회의 독재를 막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교회들이 대표자를 파송하는 광의의 회의에 의해서 지역교회들의 자유가 보장, 보호되는 일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말한다.²¹

마지막으로 베이절의 철저한 anti-hierarchy 정신은 목사의 죄들에 대한 항목들인 8장 14항, 15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에서는 목사의 용서할 수 없는 죄가, 15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반드시 시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목사의 죄목들이 나열된다. 제네바 교회법과 베이절 항목들을 비교하자면 베이절 항목들에서만 발견되는 중요한 추가들이 있다. 그것은 14항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목사의 죄의 항목에 ‘교회와 동료 직분자들에 대한 독재권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추구’가 있다. 15항에 곧, 용서받을 수 있지만 처벌받아야 하는 죄의 항목에서는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지배권을 은밀하게 추구하는 것’을 마지막에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이 항목에는 ‘헛된 영광과 자만에 대한 욕심과 추구’를 언급한다. 캄빠이스는 이를 목사들의 독재적인 욕망을 반드시 교회적인 치리와 처벌에 대상아래 두어야 한다는 이 회합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한다.²² 제네바 교회법보다 추가된 이런 항목들은 네덜란드 지역의 개혁교회들이 이미 공식적인 총회적 광의의 회의를 형성하기 전부터 한 지역교회에서 발생하는 목사의 독재권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이 광의의 회의에서 권리를 되찾도록 하는 의식이 분명했음을

²¹ Kamphuis, *Zo vonden wij elkaar*, 26-28.

²² Kamphuis, *Zo vonden wij elkaar*, 17-18.

보여준다. 이 항목이 런던 피난민 개혁교회에서 있었던 목사 판 빙언의 분쟁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에²³ 단지추상적으로 교황주의나 감독주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미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목사 독재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베이절 회합에서는 제네바에서보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훨씬 강하게 천명되었다. 교회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은 단지 목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도둑질하려는 사탄과의 싸움을 의미했기 때문에 장로들과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3. 엠던총회 (1571)

엠던 총회록은 모두 5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24항으로 이루어진 부칙이 덧붙여져 있다. 엠던 총회록 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위에, 어떤 말씀의 봉사자도, 어떤 장로나 집사도 다른 직분자들위에 지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지배하려는 모든 불신과 미혹대신에 동등함이 주어진다.”²⁴ 이는 파리 총회의 교회 규칙서

²³ 베이절 항목들에 등장하는 목사의 독재권에 대한 분명한 언급의 구체적인 배경으로는 1563년에 런던에서 목사로 일하던 고프리트 판 빙언(Godfried van Wingen)에 의해서 야기된 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는 젊은 시절 런던 피난민 교회를 목회했던 알 라스코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서 목사인 판 빙언이 자신의 독재권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분쟁을 만든 이 당시의 런던에 있던 피난민 교회를 언급하면서 ‘목사독재정치(Dominocratie)’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베이절 회합에는 런던의 한 피난민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 모데트(Modedt)가 참석했다. 그는 외장인 페트루스 다트헤인(Petrus Datheen) 다음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바로 이 모데트 목사를 통해서 판 빙언의 분쟁 사건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Kamphuis, 20. 캄빠이스는 목사 판 빙언에 의해서 야기된 런던 피난민 교회의 문제를 소개하면서 판 빙언과 그의 지지자들은 모든 아버지들이 두 명의 중인의 추천서를 받드시 제출해야 그 야기에게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는 새로운 규칙을 교회에 강제적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예를 든다.

의 좀 더 치밀한 확장이자 베이절에서 구체화된 anti-hierarchy 정신의 재확인이다. 지역교회들 사이에 관계에서 그 어떤 위계질서(hierarchy)적인 순서지움도 개혁교회들의 연합에서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 어떤 사람의 지배나 주도를 거부하고 오직 진리아래서 예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모든 지역교회들이 함께 놓이는 것이 이들이 모인 교회적 결속(kerkverband)의 핵심이다. 동시에 이런 정신은 한 지역교회의 직분자들 사이에도 확인되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직분자들 사이에 표어는 “너희 주인은 하나이고 너희들은 모두 형제들이다”(마태복음 23:8)이라는 말씀 속에 축약되어 있다.

바로 이어지는 2항은 이들의 교회적 언약이 철저하게 교리, 신앙고백의 통치와 지배아래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사실은 증거한다.

네덜란드의 (지역)교회들 사이의 하나됨이 신앙고백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제들은 훌륭하게도 네덜란드 교회들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로 생각하였다. 동시에 프랑스 안에 있는 교회들의 신앙고백에 서명하고 그래서 프랑스 교회들과도 하나됨과 교제를 증거하고 반대로 프랑스 교회들의 직분자들도 네덜란드 교회들의 신앙고백에 함께 함을 보여주었다.

이 항목은 교회들의 하나됨은 철저하게 신앙고백적 하나됨이어야 한다는 엠턴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동시에 엠턴 총회의 주도적인 인물인 필립스 마르닉스의 염원인 프랑스 총회의 신앙고백과 교회규칙서를 따르고자 하는 정신이 잘 나타난다. 엠턴은 새로운 어떤 작업을 시도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프랑스 모델에 자신을 연결시켰다.²⁵ 이는 동시에 성경적

²⁴ Acta ofte Handelingen der versamelinghe der Nederlandsche Kercken die onder 't Cruys sitten, ende in Duytschlandt, ende Oost-Vriesslandt verstroyt zijn, gehouden tot Embden den 4 Octobris Anno 1571. in *Kerkelijk Handbockje bevattende de Bepalingen der Nederlansche Synoden en andere sukken van beteekenis voor de regeering der kerken*, edited by H. H. Kuyper (Kampen: Bos, 1905), 35.

인 종교개혁적 삶이 칼빈의 지도와 가르침의 도움을 받아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엠던은 프랑스 모델을 많은 점에서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발전된 점들을 보여준다. 캄빠이스는 엠던 53항이 파리 총회의 교회규칙서와 거의 모든 점에서 일치하지만 단 한 가지 점에서 달라진 점을 지적한다. 프랑스 교회 규칙서에 '교회'의 이익(Het profijt der kerk)라고 단수로 표기된 부분이 엠던에서는 '교회들'의 이익(der nutticheydt der Kercken), 곧 복수로 표기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프랑스 교회 규칙서는 하나됨이 중심이었기에 지역교회들의 연합을 단수인 '교회'로 표기하고 엠던은 지역교회들의 독립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회들이라고 고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²⁶ 데던스(P. Deddens)는 또 다른 차이를 지적하는데 엠던은 당회에 집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²⁷ 이것을 통해 엠던은 직분자들사이의 평등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캄빠이스는 프랑스와 엠던의 다음과 같은 차이들을 지적한다. 1)프랑스 교회 규칙서는 당회, 시찰회, 지역총회 그리고 (일반)총회에 대해서 기술하지만 그 순서상 총회를 가장 먼저 두고 있다. 반면에 엠던은 당회를 먼저 기술한 뒤 광의의 회의에 대해서 기술하는 순서를 따르는데 이는 엠던이 지역교회의 당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협의의 회의에서 광의의 회의로 나가는 질서를 고수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2)장로와 집사의 봉사기간에 대한 것이다. 15항에서 엠던은 베이절과 같이 2년 봉사 후의 무적으로 직분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1559년 파리 1차 총회는 이 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1565년 2차 총회에서는 어떤

²⁵ Kamphuis, *Zo vonden wij elkaar*, 55.

²⁶ Kamphuis, *Zo vonden wij elkaar*, 56.

²⁷ 엠던 Acta 6. 참조, P. Deddens, *De positive der diakanen ten aanzien van den kerkeraad* (Rotterdam, 1947).

강요된 이유없이 장로와 집사 직분자를 교체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점에서 엠던과 베이절은 직분자들의 지배와 독단에 대한 매우 강력한 경계를 세심하게 보여준다. 3)프랑스 모델은 총회의 준비에 대한 토론에 지역교회들을 연결시키지 않고 배제한다. 다만 지역적 총회가 있을 때만 지역교회들의 결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엠던에서는 총회를 위한 모든 준비에서 지역교회들이 반드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두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작은 점에서도 엠던은 지역교회들의 중심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한다.²⁸

네덜란드 지역과 피난민들의 교회들의 최초의 교회 연합적 모임인 베이절 회합과 엠던 총회의 정신을 요약하자면 1)프랑스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지역교회들이 교회적 연합을 형성하여 함께 모여야 하고 광의의 회의들을 형성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2)그러나 이런 광의의 회의들은 철저하게 anti-hierarchy적 정신아래 지역교회들의 중심성, 독립성, 보편성,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총회가 상회가 되어서 지역교회들을 침해하는 총회주의는 불법적인 것이다. 동시에 한 지역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 사이에 이런 점들이 분명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3)모든 교회의 통치와 치리가 한 주인이신 예수님과 신앙고백아래 놓여야 하고 교회의 일치는 반드시 진리의 일치, 신앙고백적 일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²⁸ Kamphuis는 D. Deddens를 인용하면서 실제적으로 프랑스 교회들은 점점 더 하나의 국가적 교회, 곧 총회를 정점으로 곧 최상의 상회, 최고의 당회로 보는 일종의 hierachy적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갔다고 안타깝게 지적한다.

III. 도르트 교회법(Dordtse Kerkorde)과 분리(Afscheiding)

1571년 엠덴에서의 첫 총회이후에 1618-1619년 도르트레흐트 총회사이에는 엠덴에서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총회가 몇 차례 회집하였다. 1574년²⁹과 1578년 도르트레흐트, 1581년 미들부르흐(Middelburg), 1586년 헤이그에서 총회가 개최되었다. 1581년과 1586년 총회에서는 교회법이 조금씩 수정보완되어 채택되었다. 특별히 1586년 총회의 교회법은 최초로 정부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다. 1618-1619년의 도르트레흐트 총회는 알려진 것처럼 알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렸고 여기서 도르트 교회법이 채택된다. 도르트 교회법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1)직분자 2)교회적인 회의들 3)교리, 성례, 이외의 의식들 4)권징조례와 시벌. 1618-1619년의 도르트레흐트 교회법이 특별한 이유는 엠덴에서 헤이그 총회까지 채택된 교회법에서 특별한 제외나 변화 혹은 발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총회가 1816년 '개혁교회의 치리를 위한 일반적인 정관(Algemeen Reglement voor het bestuur der Hervormde Kerk,³⁰ 이하 정관)'이 국왕에 의해서 제정되기 전까지 열린 마지막 총회였다는 점이다.³¹ 따라서 '도르트 교회법'은 단지 1618-1619년의 도르트 교회법만

²⁹ 네덜란드 독립시기에 교회들은 빌립 판 오란녜의 스페인 저항을 확고하게 지지하였다. 그러나 1574년에 도르트 총회에서는 왕자의 기대와 어긋나는 원리가 정해진다. "목사들과 장로들은 당회, 시찰회와 노회에서 교회의 문제 외의 것들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교분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를 지키려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여준다. Van't Spijker, 『칼빈의 생애와 신학』, 269-70.

³⁰ 똑같이 개혁교회라고 번역될 수 있는 두 개의 화란어 단어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Hervormde kerk이고 둘째는 Gereformeerde Kerken이다. 전자는 1816년에 공포된 규칙을 준수하는 입장에 선 교회들을, 후자는 이에 대항한 교회들을 통칭하게 되었다. 3장에서 다룰 내용은 사실상 Hervormde kerk(단수)와 Gereformeerde Kerken(복수)사이의 차이와 갈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³¹ P. van den Heuvel, *De Hervormde kerkorde: Een praktische toelichting* (Zoetermeer: Boekencentrum, 1990), 32.

을 의미하지 않고 베이절에서 시작된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의 교회법의 총정리이자 이 시기 총회들에서 채택되었던 모든 교회법에 나타난 기본적인 정신과 사상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보아야 한다.

1618-1619년의 도르트총회는 국가의 큰 영향력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역관리의 동의가 없이는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되었고 관리 2명을 당회에 파견하여 함께 협력하도록 했다. 3년마다 소집되는 전국총회도 관리의 조언을 받도록 했다. 실제적으로 1816년까지 전국적인 총회는 열리지 못하고 지역시찰들 차원에서의 모임만이 진행되었다.³² 정부 관리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교리에 있어서) ‘유통성을 가진 자들(rekkelijken)’³³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신앙고백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교회안팎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국가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들이 권징조례에 의해 치리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신학적 주제에 대한 논쟁적 저작물들을 금지해서 계몽주의, 이성주의에 의해서 전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적 순수성과 통일성이 매우 흐려진 상태가 지속되었다. 국가는 교회내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연히 다루어져야 할 교리적 부분과 교회적 필요에 대해서 교회는 전혀 아무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³⁴

1816년에 공포된 ‘정관’은 이런 흐름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당시 국왕인 빌럼 1세는 이 규칙을 공포하면서 ‘국가교회’ 조직을 만들었다. 직분자들의 회의였던 노회와 총회는 일종의 고정된 멤버를 가지는 치리위원회

³²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서울: 살림, 2004), 20.

³³ 이와 반대되는 성향은 ‘정확성을 견지하는 자들’(Preciezen)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이들은 신앙고백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평생을 지켜가려는 자들을 말한다. ‘계속된 개혁(Nadere Reformatie)’을 주도했던 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C. G. Bos, *Nieuwe Nederlandse Kerkgeschiedenis* (Barneveld: Vuurbaak, 1990), 77.

³⁴ A. M. Lindebook, *Hervormd en Gereformeerd* (Aalten: De Graafschap, 1957), 30-32.

(Bestuur)로 전환된다. 총회는 10명의 목사와 한 명의 장로 혹은 은퇴장로로 구성되었다. 교리적 차이로 교회가 분쟁을 겪을 것을 두려워한 정부에 의해 총회는 교리적 차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 통치위원회의 유일한 임무는 교회들을 ‘평안’과 ‘질서’속에 유지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총회는 강력한 국가 권력에 의한 섭정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하나의 강력한 통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회들이 모두 하나의 단일한 조직체로 묶이게 되었고³⁵ 영적으로는 침묵하는 교회로 전략해 버렸다. 유일하게 지역교회들이 대표자들을 파견할 수 있는 노회였는데 사실상은 모든 결정권이 노회의 치리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었다. 이 노회의 치리위원회는 국왕에 의해서 임명된 의장단들의 위원회였다. 지역교회들이 파송한 대표자들이 감당한 일은 이 노회적 치리 위원회의 인사들에 대한 임명제청과 노회적 차원의 미망인들을 위한 자금 등에 대한 개입할 수 있는 정도에 국한되었다.³⁶ 사실상 국왕이 교회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모든 총회적 통치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규칙들은 국왕휘하에 있는 장관에 지휘 아래 놓이게 되고 모든 회의는 국왕의 승인을 획득하도록 조처했다.

이미 이 ‘정관’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의 항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에서 이렇다 할만한 성과 있는 항의는 일어나지 못했다. 분리운동의 중심인물인 더 콕(De Cock)은 자신의 목회지인 울름(Ulrum)에 오기전까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도르트 신경을 접해보지도 못한 목사였다. 그는 울름에서 1829년부터 목회했는데 성도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처음 도르트 신경을 접한다. 그는 비록 분리운동의 가장 중

³⁵ 국가교회(Hervormde Kerk)는 한 교회(kerk)와 지역의 교구(gemeente, parish)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분리측과 애통측은 1892년에 합동하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들(Nederlandse Gereformeerde Kerken)이라고 하여 지역교회들을 교회(kerk)라고 규정하였다.

³⁶ Van den Heuvel, *De Hervormde kerkorde*, 32.

요한 리더였지만 ‘분리 또는 복귀헌장’에 서명해서 분리운동의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1834년의 불과 3년 전인 1831에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처음 접했다고 고백한다.³⁷ 이런 점에서 ‘분리’는 이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된 또 하나의 분리인 ‘애통’에 비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훨씬 신앙고백적 성격이 강한 회복운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정관’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교회(Hervormde kerk)가 교리적, 신앙고백적으로 개혁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거짓교회이며 그런 점에서 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천명하였다. 이런 신앙고백 중심적인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측은 1836년에 가진 최초의 총회에서 도르트 교회법을 채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운동이 동시에 베이절에서 시작되어 도르트 교회법으로 수립된 개혁교회의 교회법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 논문에서 역사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분리’운동이 어떻게 당시 총회와 노회를 이루고 있었던 치리위원회로부터 철저하게 핍박당했고 그런 과정에서 파리 총회에서부터 확인된 지역교회들의 자유와 독립성을 옹호하고 반 위계질서(anti-hierarchy)적 성격을 펼 수 밖에 없었던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리측의 중심인물인 더 콕 목사는 두 가지 문제로 노회에 고소를 당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교회가 고백하는 교리와 신앙고백에 관련된 것이었다. 첫번째 문제는 더 콕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교인이 아닌 성도가 더 콕 목사에게서 유아세례를 받고자 한 것이었다. 이유는 유아세례에서 부모가 서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쳐 지는 모든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을 믿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부모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와 가르침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

³⁷ John H. Kromminga, “De Afscheiding'-Review and evaluation,” 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0/1 (1985): 44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약을 하면서 유아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고 자신들의 교회가 아닌 더 콕 목사와 그가 시무하던 울름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요청했다. 울름교회 당회는 이 호소를 받아들였고 더 콕 목사는 이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또 하나의 고소건은 더 콕 목사가 쓴 '두 늑대에게 공격당하는 진실된 개혁주의 교리와 성도들을 위한 변호'라고 불린 팜플렛 때문인데 여기서 더 콕은 개혁주의 신앙표준에서 노골적으로 떠난 두 사람에게 대해서 명백한 교리적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그의 노력은 교회 안에서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학과 교리가 확산되도록 피하는 자들에 의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들은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더 콕을 굴복시키고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교리와 신학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³⁸ 더 콕에 대한 조사는 먼저 노회 치리위원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사실상 그에게는 어떠한 변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다만 출교의 경고만이 있었다. 더 콕은 당회의 서명이 들어간 항의문으로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1834년 3월에 지방총회에서 더 콕에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놀랍게도 다루어진 죄의 항목이 노회에서와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노회에 접수되어 다루어진 안건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준 문제였지만 지방총회에서는 '두 늑대'를 비판한 팜플렛을 문제 삼았다. 계속해서 출교가 언급되고 사례비로 위협하였다. 심지어 어떤 목격자는 삼분의 이가 넘어야 하는 치리위원회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진행되어서 절차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증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국단위의 총회는 더 콕이 회개하도록 6개월의 시간을 주었다. 신앙고백과 교리문제로 같이 항의하는 목사들에 대한 경고가 통보되고 지역교회

³⁸ J. C. Rullmann, *De afscheiding: In de Nederlandsch Hervormde Kerk der XIX Eeuw* (Kampen: Kok, 1927), 80.

들의 안전상정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마지막 최후수단인 왕에 호소하는 길도 막혔다. 1834년 5월 더 콕은 지방총회 치리위원회로부터 목사직에서 제명되었는데 여기서는 앞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죄목을 적용했다. 더 콕은 이 기간동안 권면을 받아들여 어떤 출판물도 내지 않지 지속적으로 해명하고 토론할 기회를 기다렸으나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더 콕을 지지하고 신앙고백에 더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사들은 모두 항의자들로 총회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이들이 시무하는 교회들의 예배와 회합은 불법이 되었다. 이제까지 진행된 재판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도록 청구서가 날라왔다. 이에 더 콕과 올름교회 당회가 분리 혹은 복귀헌장에 서명하고 지방 총회 치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리운동은 분리측으로 급격하게 형성되어 갔다.³⁹

분리측에 속한 목사들과 지역교회들은 1836년 최초의 총회를 가지고 1618-1619년 도르트총회에서 확정된 개혁교회 3대 신앙고백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네덜란드 신앙고백, 도르트신조를 고백하고 확인함으로써 분리측이 신앙고백적 교회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도르트 교회법을 수용함으로써 1619년 총회이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고 특별히 1816년 ‘일반정관’으로 인해 형성된 국가교회(Nederlandse hervormde kerk)적 교회정치와 완전하게 결별하고 베이절 회합이후 개혁교회법 속에 면면히 흘러온 지역교회의 자유와 독립성을 분명히 했다.

³⁹ Kromminga, "De Afscheiding'-Review and evaluation," 52-53. 도르트 교회법이 완전하게 수용된 것은 1840년 총회이다. 1836년 총회에서는 도르트 교회법을 수정해서 인정하였는데 42항목들을 일부 수정하고 8개항목은 제외하였다. 내부논의 끝에 1840년 총회에서는 도르트 교회법을 수정없이 그대로 받들지않은 설명을 덧붙였다.

IV. 애통(Doleantie)와 아브라함 카이퍼의 교회이해

1. '애통'(Doleantie)과 '분리'(Afscheiding)

'애통'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제 2의 '분리'라고 볼 수 있다. '분리'측이 1834년에 국가교회(Nederlandse Hervormde Kerk)로부터 분리했다면 '애통'측은 1886년에 분리하여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조직하였다. 이 양자는 1892년에 양측은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들(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s)'을 형성하였다.

양 측이 서로간의 합동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830년대의 '분리'운동을 성숙하지 못하고 성급한 것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1869년에 분리측 교회, 곧 기독교개혁교회(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en)는 당시 총회의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교회법과 규정을 국가에 통보하여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 이를 아브라함 카이퍼는 문제 삼았는데 그의 눈에는 이것이 교단을 주체로 보고 지역교회를 지교회로 보는 국가교회의 이념을 수용한 오류로 보았다. 이 문제는 양 측이 합동하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결국 1869년에 얻어낸 자유의 규정을 정지시키고 각 지역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신앙고백과 교회정치를 정부에 통보해서 같은 법적인 인정을 받아내었다. 반면에 '분리'측인 기독교개혁교회는 '애통'이 국가교회를 거짓교회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교회법적 오류만을 지적한 것은 고백적이고 전체적인 개혁은 아니라는 증거라고 비난하였다. 바빙크는 '분리'가 개혁교회의 진리를 위한 투쟁이었다면 '애통'은 개혁교회의 '권리'를 향한 투쟁이었다고 양자를 비교하기도 하였다.⁴⁰

⁴⁰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62-70.

이런 양측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양자는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분리’ 운동 때에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라는 문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한’이라고 묘하게 수정하면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교리만 받아들이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게 된 1816년의 일반정관처럼 1854년 국가교회에는 신조에 포함된 교리의 정신과 주요한 몇 가지 점들에만 동의하면 목사로 임직받을 수 있었다. 1878년부터는 여하한 교리적 차이가 있다라도, 이 때문에 당회가 교인 자격에 제재를 가하거나 성찬 참여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암스텔담 교회의 당회 다수가 이런 규정을 거부하고 교인 회원권을 엄격하게 규제하자 시찰과 광역노회는 카이퍼를 포함한 당회원들의 당회원권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런 점에서 교리와 신앙고백적 차원인 교인의 자격과 교회법적인 문제인 당회의 자율권이 ‘애통’의 중심문제가 되었다.⁴¹ 결론적으로 1834년의 ‘분리’와 1886년의 ‘애통’은 신앙고백적 정체성과 지역교회들의 자유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2. 아브라함 카이퍼의 관점들

‘애통’의 중심인물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애통’의 과정 속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글들을 쏟아내었다. 그의 교회론 자체를 여기에서 다 다룰 수는 없으나 특별히 그가 지역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가는 ‘애통’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교회를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

⁴¹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60-61.

또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말한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은데 그는 불가시적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동일화 하거나 가시적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은 이 관계들을 해명하는데 있지 않고 다만 아브라함 카이퍼의 교회의 이해 가운데 지역교회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불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가장 먼저 계시된 것이 '나타난 교회'(ecclesia apparens)이다. 이는 아직 제도로서의 교회는 아닌데 다만 신앙고백안에서 가시적이 된 유기체와 회개에 이른 중생자들이다. 한 지역에 있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적 하나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어 교회형성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⁴² 그래서 제도로서의 교회 형성을 이루는데 교회 형성에서 카이퍼가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의 직분자이다. 제도로서의 교회를 형성해가는 주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직분자들의 지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제도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자들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은 말씀의 직분자들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교회를 형성하는데 요구되는 세 가지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성도들의 교제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를 형성해 가신다. 2) 믿는 자들이 교회에 결합되기를 결심하고 행하는 것 3) 말씀의 봉사자가 안수받고 세워지는 것.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교회형성을 요약한다. "지역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워질 때 거기서 가시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반적인 교회로 세워진다."⁴³

⁴² A. Kuiper, *E voto Dordraceno: Toelichting op den Heidelbergischen Catechismus*, II (Kampen: Kok, 1892), 146.

⁴³ Tractaat, 27, P. A. van Leeuwen, *Het kerkbegrip in de theologie van Abraham Kuiper* (Franeker: 'tWever, 1946), 178에서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카이퍼에게 있어서 한 지역교회는 처음이자 실재적인 교회형성(kerkformatie), 곧, 하나의 불가시적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교회의 본질이 제도로서 완벽하게 실현되는 유일한 실재이다. 그는 이런 자신의 생각을 칼빈에 호소하는데 “칼빈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이 땅위에서는 지역교회만이 교회이다.” 그는 말씀의 직분자들의 세우게 되는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 한 번 지역교회만이 교회라는 결론을 내린다. “만약 지역교회가 독립적이지 않고 본질에 있어서 (노회와 총회 같은) 좀 더 넓은 범위의 다른 어떤 보이는 교회나 교회연합 아래 놓인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연합체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운영하시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권세를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권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직분자들은 같은 계단에서 있고 어떤 식의 hierarchy적인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⁴⁴ 그는 프린스턴에서 행한 그의 강연 ‘칼빈주의에서 파리 총회의 교회법과 엠던과 도르트 교회법의 모토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모든 지역교회들은 지위에 있어서 동등한데 이는 총회적인 모임에 어떤 식의 지배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⁴⁵

아브라함 카이퍼는 철저하게 지역교회의 보편성과 독립성을 옹호한다. 모든 각각의 지역교회들은 그 자체로 교회전체이며 그 자체로 완전

⁴⁴ *Tractaat*, 35, in Van Leeuwen, *Het kerkbegrip*, 179. 그렇기 때문에 광의의 회의가 가지는 권세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회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참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⁴⁵ Abraham Kuyper, *Het Calvinisme* (Amsterdam: Hoverker & Wormser), 55.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주신 말씀과 교회의 회중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믿는 자들 사이에 높은 지위는 있을 수 없다. 오직 섬기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봉사자들만 있을 뿐이다. 이는 철저한 장로교적 정치 형식에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회중에게 직접 내려오는 교회의 권력은 회중으로부터 사역자만에 집중되고 사역자에 의해서 형제들에게 시행된다. 그리스도의 주권만이 군주제적이다. 그러나 지상 교회의 정치는 골수까지 민주적이다.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모든 지역교회들은 지위에 있어서 동등한데 이는 총회적인 모임에 어떤 식의 지배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한 교회이다. 각각의 교회들만이 지상에서 교회이며 모든 권세와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 각각의 지역교회들이 연결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그것은 철저히 지역교회들의 자유로운 연합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는 지역교회가 국가교회의 유기체적인 하나됨에서 세포들도 여겨지거나 어떤 식의 교회연합체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완강하게 거부한다. 물론 지역 교회는 거룩한 보편교회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족 교회나 국가교회에서 말하는 개념이나 로마교회에서 말하는 세계교회의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단코 불가능하다.⁴⁶ 그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회중교회와 유사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계한다. 회중교회는 지역교회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대신 믿는자들의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권세뿐 아니라 운영의 권위도 믿는자들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특정한 직분자들과 당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지역교회를 교회로 보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광의의 모임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광의의 연합에서 교회는 유기체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런 다양한 교회연합체가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함 몇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1) 지역교회들의 독립성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된다. 지역교회들의 연합이 비록 어떤 의무적이고 필연적인 상태로 간다 할지라도 지역교회들의 자유로운 결속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교회 연합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이런 교회연합은 철저히 우연적, 이차적인 것이고 오직 지역교회만이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2) 교회 연합은 지역교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는 모든 지역교회가 모든 종류의 은혜와 은사를 다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연합을 통해서 각각의 교회들에 주신 은혜와 은사를 공유하고 풍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⁴⁶ Van Leeuwen, *Het kerkbegrip*, 180.

세상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고 분투하기 위한 지역교회들의 부르심과 사랑의 현재화를 위해서 교회들은 은사를 풍성하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연합이 요구된다.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신앙고백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교회들의 연합은 요청된다. 3) 교회연합의 조건과 보증은 동등함이다. 이는 동시에 놓칠 수 없는 기초인 신앙고백의 일치이다. 모든 종류의 교회연합은 이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는 민족교회, 총회교권적인 조직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런 방식의 교회연합에서는 매우 다양한 신앙고백들을 연결시켜 놓아서 단지 외적인 하나됨을 형성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하나의 기초, 하나의 원리를 추구하는 내적인 하나됨이 중요시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교회연합은 신앙고백과 교회정치 그리고 예배모범에 있어서의 완전한 하나됨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카이퍼는 지역들의 환경들도 살펴야 한다고 보는데 원래적으로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일치에 기반한다면 세계교회가 모든 한 교회연합을 형성할 수 있지만 언어나 국가와 민족적인 한계를 인정해서 그 안에서 총회는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⁴⁷

⁴⁷ Van Leeuwen, *Het kerkbegrip*, 182-86. '분리'측의 후예이지만 '애통'측과의 연합에 적극적이었던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의 교회정치적 입장은 아브라함 카이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부분을 다 소개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고로 할 수 있겠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에 보내신 이 권세는 지역교회에 있고 당회에 있다. 신앙 성경에 따르면 모든 지역교회는 독립적, 완전한 교회(eene ecclesia completa)이고 그래서 전체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을 가진다."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Book IV (Kampen: Kok, 1998), 411. "교회의 모임들(지역연합, 시찰회, 노회, 총회, 세계적 회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차별이 없다. 어떤 하나의 회의가 다른 회의보다 더 높거나 비중이 더 높지 않다. 덜 오류에 노출되거나 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확증되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교회와 각 회의는 다른 각각의 교회와 회합에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중략) 이 회의들은 다른 종류나 더 높은 권세가 아니라 단지 더 넓은 지역으로부터 모이고 더 넓은 지역에 적용되는 넓은 권세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Book IV, 511.

V. 결론

네덜란드 개혁교회법은 칼빈과 프랑스 개혁교회 교회법에 영향아래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초기에 베이절 회의, 엠던 총회, 도르트 총회를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면들을 가지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잊혀져 있었지만 19세기의 ‘분리’와 ‘애통’을 통해서 16-17세기에 형성된 도르트교회법으로 총칭될 수 있는 초기의 개혁교회법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더 강화되었다. 나아가 도르트교회법의 확인은 당시의 개혁교회들을 역사적인 교회갱신운동으로까지 이끌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법이 걸어온 역사 속에서 확인된 개혁교회법의 근본정신과 실재가 현재 한국교회에 주는 줄 수 있는 도움을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신앙고백적 고백교회들이 지역교회들로 세워지는 일이 요청된다. 교회법은 사실은 신앙고백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신앙고백서와 교회법을 통일성속에서 이해하고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면서 교회법을 함께 만들고 채택해서 지켰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치밀한 교회법 조항들이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고백에 하나됨에 기초하지 않을 때 법 자체는 무력하다.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사실상 신앙고백 상실의 시대에 내몰려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전혀 무지한 성도들이 장로교회에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목사들조차 신앙고백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신앙고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신앙고백이 목사에 의해서 성실하게 가르쳐 지고 이 가르침에 충실한 지역교회들이 건실하게 서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존재하는 어떤 형태의 광의의 회의나 연합은 자칫 아브라함 카이퍼가 비판한 국가교회적인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총회교권주의를 피할 수가 없고 단지 외형의 하나됨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엠던에서 천명된 우리는(네덜란드 각 지역에 흠

어저 있던 교회들과 피난민교회들) 하나의 신앙고백안에서 서로 서로를 발견했다는 정신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둘째, 철저한 반 위계질서(anti-hierarchy)정신이다.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위에, 어떤 말씀의 봉사자도, 어떤 장로나 집사도 다른 직분자들위에 지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파리 총회에서부터 아브라함 카이퍼의 ‘애통’속에서 늘 울려 퍼지고 확인되었던 교회법의 구호는 이것이다. 이는 단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과 주인되심을 인간이나 조직의 교권에 의해서 강탈당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직분자는 다른 직분자나 성도들을 자신의 지배아래 엮어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엮어매어야 한다. 한 지역교회는 다른 지역교회를 바로 이 정신에 따라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묶여가도록 서로를 세우고 도와야 한다. 광의의 회는 교권으로 지역교회를 자신들의 지배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역교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보편성, 자유를 보장하는 광의의 회의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한국장로교회에서 노회나 총회는 상회라고 불리면서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 권위로 지역교회들을 그 통제하려는 교권정치의 장이 될 때가 많다. 이들 회의는 임시적, 부차적인 것인 것이고 ‘지역교회만이 교회’라는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입장을 확실하게 견지하는 것이 요청된다. 어떤 형태의 교회 연합적 모임도 철저하게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지역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놓여 신앙고백적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시작과 출발점을 두어야 한다. 반면에 개교회주의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한국교회들이 신앙고백적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교회를 억압하는 교권주의 때문에 여기서 이탈해 나가는 반대 급부를 경험하고 있다. 교황주의에 반대하는 개혁주의적 한국교회에서 사실상의 교황주의가 개교회주의를 통해서 곳

곳에서 부활하고 있다. 교회법과 규례, 광의의 회의를 통한 연합적 결속을 무시하면서 각 지역교회가 한 사람의 지배와 더 큰 무질서 속에 빠져 들어가는 현상이 교권주의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개혁교회법은 교회의 지역 교회들의 연합적인 하나됨을 최소화하지 않고 최대화했다는 정신을 기억해야 하겠다. 지역교회의 독립과 자유에 최대의 중심을 두면서도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서로서로를 찾아나갔던 개혁교회의 선배들의 노력이 다시 한 번 회복되어야 하겠다.⁴⁸

교회법은 불변하지 않고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개혁교회들이 교회법을 작성하면서 추구했던 정신은 성경과 신앙고백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신앙고백에 충실한 고백적 지역교회들이 교회로서 서로서로를 찾아나가고 직분자들 사이에서, 지역교회들 사이에서 서로서로를 엮어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엮매이는 개혁교회법의 정신이 한국교회 안에서 실현되길 고대해본다.

⁴⁸ 이런 주장이 장로교회 정치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나 부정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개혁교회 치리질서는 단순히 독립교회나 회중교회라고 불릴 수 없는 길을 따라 형성되어 왔다. 다만, 같은 신앙고백과 신학위에 있지만 조금은 다른 길로 발전되어 온 두 전통-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사이로 대화하고 배워가는 일을 필요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19-20세기를 거치면서 개혁신학을 견지한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이 가진 교회질서에 대한 입장들은 네덜란드 초기 개혁교회 치리질서에 대한 정립과정과 더불어 장로교회 정치질서를 따르는 한국의 개혁교회들에도 중요한 가르침과 유산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Abstract〉

The implication of the Reformed church order for Korean Church:

A study of the Reformed church order from Emden synod (1571)

to Abraham Kuyper

Jae-Youn Kim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Systematic Theology)

Church order is essential in the reformed tradition. John Calvin, an influential reformer, stressed the unity of doctrina and disciplina. For that reason, he composed his Ecclesiastical Ordinances(1541) as soon as he came back to Geneva from Strasbourg. Under Calvin's influence, many Reformed church in Europe followed his model in producing their confessions and the documents about the church order and government.

Early Dutch Reformed churches which composed of dutch and french speaking congregations and refugee-congregations in England and Germany had its foundation of church order in Calvin's Ecclesiastical Ordinances and the Church Order of French Reformed church accepted by the synod in Paris (1559). Especially the church government order of the French Reformed church - local church, presbytery and synod - was well settled in 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 However, an anti-hierarchical character was intensified more than in the previous church orders. When examining the articles

yielded by the Wezel convention(1568) which was the first official synodic meeting, one can discover evidences to confirm anti-hierarchical tendency. Leaders gathered in Wezel understood that the presbytery and the synod must focus on safeguarding the privileges of the ministers and local churches. Articles on pastor's sin clearly demonstrated how Wezel convention consistently disapproved of the dominance of one minister or presbytery over other church offices. The first official synod of Dutch Reformed churches in Emden (1571) acknowledged this anti-hierarchical spirit of the Wezel convention.

In the 19th century, dutch Reformed churches confronted secession twice, 'Afscheiding' and 'Doleantie'. Local churches, pastors, and faithful believers desired to restore the identity of the Reformed church and remain faithful to the reformed confessions. Regarding the church order, they reaffirmed the church order of Synod of Dordrecht (1619) which contained almost the same substances of Wezel's articles and the church order of the first synod in Emden.

Not only Abraham Kuyper who plays a key role in 'Doleantie,' but Herman Bavinck, the successor of 'Afscheiding,' also supports the independency and universality of local church. Eventually, they argued that *Kerkverband* and the broader assemblies - particular and general synod - do not have an authority over the local church. No form of hierarchy can be permitted between the church offices and between other local churches.

Korean churches can benefit from the Reformed church order established through the history of struggle in two aspects. First, the presbytery or the synod often results in clericalism in Korean churches. In the reformed churches, the presbytery and the synod

must serve its purpose to protect the independency and privilege of the local churches and their ministers. These broader assemblies cannot operate their dominancy over the local churches. Second, in reaction to clericalism occurred in broader assemblies, an individualistic view which negate the kerkverband (association of the confessional churches) is also pervasive in Korean churches. They will benefit if they remember that the Reformed church order was designed not to minimize the unity of the local church but to maximize its communion.

* **Key Words:** church order, Reformed church, Abraham Kuyper, Synod of Emden(1571), Synod of Dordrecht(1619), Herman Bavinck

〈참고문헌〉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서울: 살림, 2004.

최윤배. “프랑스 개혁교회의 예배와 직제에 관한 연구.” 『조직신학연구』 14 (2011 봄·여름호).

허순길. 『개혁교회 목회와 생활』. 서울: 고신총회출판국, 1994.

Bakker, W. “Wat is kerkrecht?” In *Inleiding tot de studie van het Kerkrecht*. Edited by W. van 't Spijker. Kampen: Kok, 1990: 13-19.

- Bavinck, Herman. *Gereformeerde Dogmatiek*. Book IV. Kampen: Kok, 1998).
- Bos, C. G. *Nieuwe Nederlandse Kerkgeschiedenis* Barneveld: Vuurbaak, 1990.
- Calvin, John. 「제네바 교회 법규」. 『칼뱅 작품선집 III』. 박건택 편역.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 Chambon, J. *Geschiedenis ener Martelaarskerk: Het protestantisme in Frankrijk*. Translated by P. v.d. Kraan. Goes: Oosterbaan, 1951.
- Heuvel, P. van den. *De Hervormde kerkorde: Een praktische toelichting*. Zoetermeer: Boekencentrum, 1990.
- Kamphuis, J. *Zo vonden wij elkaar: Het begin van het Nederlandse gereformeerde kerkverband, de synode van Emden 1571*. Groningen: Uitgeverij de Vuurbaak, 1971.
- Kromminga, John H. “De Afscheiding’-Review and Evaluation.” 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0/1 (1985).
- Kuyper, A. *E voto Dordraceno: Toelichting op den Heidelbergschen Catechismus, II*. Kampen: Kok, 1892.
- _____. *Het Calvinisme*. Amsterdam: Hoverker & Wormser, 1959.
- Lindebook, A. M. *Hervormd en Gereformeerd*. Aalten: De Graafschap, 1957.
- Mentzer, Raymond A. “Calvin and France.” In *Calvin Handbook*. Edited by Herman Selderhuis. Grand Rapids: Eerdmans, 2009: 78-87.
- Rullmann, J. C. *De afscheiding: In de Nederlandsch Hervormde Kerk der XIX Eeuw*. Kampen: Kok, 1927.

Van der Pol, F. "Calvin and the Netherlands." In *Calvin Handbook* edited by Herman Selderhuis. Grand Rapids: Eerdmans, 2009: 87-97.

Van Leeuwen, P. A. *Het kerkbegrip in de theologie van Abraham Kuyper* Franeker: 't Wever, 1946.

van 't Spijker, W. "De opvattingen van de Reformatoren." In *Inleiding tot de studie van het Kerkrecht*. Edited by W. van 't Spijker. Kampen: Kok, 1990. 86-103.

_____. *Johannes Calvin zijn Leven en zijn werk*. 『칼빈의 생애와 신학』박태현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De Wezelsch Artikelen van 1568. In *Kerkelijk Handbockje bevattende de Bepalingen der Nederlansche Synoden en andere sukken van beteekenis voor de regeering der kerken*. Edited by H. H. Kuyper. Kampen: Bos, 1905.

Acta ofte Handelinghen der versamelinghe der Nederlandtsche Kercken die onder 't Cruys sitten, ende in Duytschlandt, ende Oost-Vriesslandt verstroyt zijn, gehouden tot Embden den 4 Octobris Anno 1571. In *Kerkelijk Handbockje bevattende de Bepalingen der Nederlansche Synoden en andere sukken van beteekenis voor de regeering der kerken*. Edited by H. H. Kuyper. Kampen: Bos, 1905.